

2025년도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주요국 우회덤핑 방지제도 분석 및 한국의 효율적 운영방안

Analysis of Circumvention Dumping and Efficient Operation Plans for Korea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최서연(崔瑞妍 Choi Seo Yeon)

seoyeonchoi0414@gmail.com

목 차

I . 서론	1
II . 우회덤핑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2
1. 우회덤핑 현황 및 피해사례 분석	2
2. 선행연구 검토	5
III . 주요국 우회덤핑 방지제도 분석	8
1. 미국의 우회덤핑 방지제도	9
2. EU의 우회덤핑 방지제도	11
3. 우리나라 우회덤핑 법령 분석	15
IV . 우회덤핑 방지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17
1. AI 기반 우회덤핑 조기탐지 시스템 구축	17
2. 무역위 관세청 기재부 등 공동 대응팀 운영	18
3.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민관학 파트너십	19
V . 결론 및 시사점	20
* 참고문헌	20
· 국문초록	23
· 영문초록	24

I. 서론

2025년 현재 세계무역 환경은 전례 없는 격변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글로벌 관세전쟁은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최고 수준인 평균 18.6%의 관세율을 기록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구축된 다자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하고 185개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세계 무역량이 0.2% 감소할 것이라는 WTO의 경고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속에서도 세계 무역은 2025년 33조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서비스 무역이 7% 성장하며 전체 무역 증가의 절반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무역의 급성장은 무역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2025년에는 B2B 거래의 80%가 디지털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관련 지출은 2024-2028년 연평균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술 기반 무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우회덤핑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반덤핑관세 회피 방식에서 벗어나 제3국 경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우회,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한 복합적 회피 기법 등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025년 상반기에만 1,400건 이상의 우회덤핑 단속을 실시한 것은 이러한 회피 시도가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각국의 우회덤핑 방지제도도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최소 18개국 이상이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EU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한 우회덤핑 조사의 약 77%를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지배력과 그에 따른 우회덤핑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오랫동안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 관세법 개정을 통해 우회덤핑 조사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1980-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의 회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 산업보호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 정부가 2025년 8월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회덤핑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경미한 변경" 유형에 국한되었던 규제를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의 경미한 변경, 부품·원재료의 제3국 조립·완성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여 미국·EU 수준의 포괄적 우회덤핑 방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청의 실제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2025년 상반기에만 428억 원 규모의 덤핑 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한 것은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우회덤

핑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2025년 격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한국의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실효성 있는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우회덤핑 급증 현상과 디지털 무역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2025년 현재의 우회덤핑 현황과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비교 분석하되 2025년 최신 조치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회덤핑 방지제도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되, 디지털 기술 활용,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국제공조 강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를 요약·정리한다.

II. 우회덤핑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1. 우회덤핑 현황 및 피해사례 분석

우회덤핑은 수입국에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이루어진 후 수출자가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생산과 선적방법을 변경하여 수출함으로써 반덤핑 조치를 적용받지 않고 수입됨으로써 무역구제 조치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수출행위이다. 이러한 우회덤핑은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고자 하는 반덤핑관세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의 기본적인 틀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이다.

<표-1> 전 세계 무역구제 조사개시 및 조치 건수 추이

구분 (단위: 건)		'87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반덤핑	국가	107	18	15	5	7	15	18	4	14	7	15	14	8	16	5	9	14	14	13	9	9	13	10	359 (255)
	품목	61	11	7	5	4	6	8	3	6	6	6	5	5	10	4	5	7	6	8	5	6	6	8	198 (145)
세이프가드		32	1	-	-	-	-	-	-	-	-	-	-	1	-	-	-	-	-	-	-	-	-	-	34 (22)
불공정 무역행위		232	9	5	5	6	5	4	6	9	12	8	9	8	10	9	12	9	10	13	3	5	8	5	402 (142)

* 출처 : WTO 통계 저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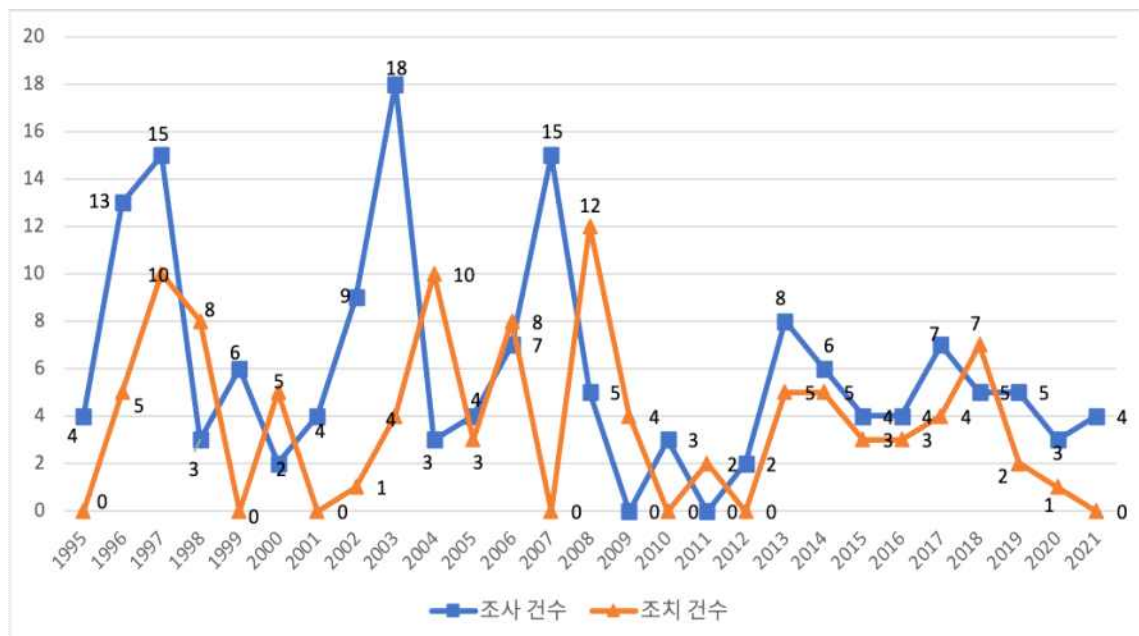
최근 미·중 무역갈등 고조와 Covid-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자국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

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위 하거나 사소한 변경을 통해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이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절실하다.

우회덤핑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도 우회덤핑 행위 방지를 위한 다자 규범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각국의 의견 차이로 인해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은 독자적으로 우회덤핑 방지체도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우회 덤핑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우회덤핑 방지체도를 도입한 국가로는 미국, EU, 인도, 호주, 캐나다 등이 있다.

WTO 반덤핑 데이터베이스 통계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의 대외 반덤핑조사 건수와 반덤핑조치 건수는 158건, 102건이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대외 반덤핑조치 건수는 2008년 12건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점차 줄어들었고 2013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그림 1> 한국 대외 반덤핑 현황¹⁾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우회덤핑 방지체도가 제정되지 않았기에 우회덤핑 문제가 발생하여도 신규 반덤핑조사를 신청하여 원심 조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등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작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우회덤핑 방지체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간 우리나라가 우회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1990년대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가 덤핑수입으로 국내시장의 90%를 독식하면서 1997년 11월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에 대해 5년간 32.8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그 이

1) WTO, Available at: <https://data.wto.org/en>, 무역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

후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산 일회용 라이터들이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시장을 잠식하였다.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 기업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원산지를 중국산에서 말레이시아산으로 위장하거나 홍콩 또는 말레이시아를 단순 경유하는 방식으로 우회덤핑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²⁾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산 CD-R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1998년 8.9%에 불과하였으나, 덤핑을 통해 2001년 60.6%에 이를 정도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국산품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10.8%에서 6.8%로 떨어지면서 국내 산업이 큰 피해를 보았다. 이에 따라 2002년 5월 재정경제부는 관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만산 CD-R에 대해 5년간 51.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³⁾ 그러나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홍콩, 중국산 제품으로 위장 수입하는 등 우회덤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만에서 CD-R을 선적하여 중국, 홍콩 등 제3국을 거치는 방법으로 수입하면서 경유지에서 재포장 및 원산지 표시를 변경한 것이다.⁴⁾

세 번째 사례를 보면,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수입산 합판의 무분별한 저가 수입으로 인해 국내 합판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됨에 따라 2011년 2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3년간 최소 5.12%에서 최대 38.10%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다. 이후 중국산 활엽수 합판의 수입물량이 급증하자 2013년 10월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대해서도 3년간 최소 2.42%에서 최대 27.2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그런데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갑자기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수입물량이 기존 대비 10배 이상 급증하였다. 조사 결과 일부 중국 수출업자가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HS 코드상 정의가 ‘양쪽 외면 중 최소 한 면이 활엽수로 구성된 합판’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활엽수 합판의 겉면에 얇은 침엽수 단판을 덧붙여 침엽수 합판으로 위장하는 등 편법으로 우회 수출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2016년 3월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해 4년간 최소 4.22%에서 최대 7.1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⁵⁾

이처럼 수입국의 반덤핑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방식이 진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보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다행이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우회 덤핑방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2) 김상욱, 2005, “관세청, 일회용 라이터 대량 밀수조직 검거,”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8886576565968&mediaCodeNo=257>
(검색일 2024.04.22.)

3) 2002.5.21. 재정경제부령 공포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주요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 비교연구,” 관세연구 14-04, p.34

5) 김시섭, 2017, “우회덤핑방지제도의 국제적 실행 및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p.78-79

세부 시행령도 마련하고 있다. 수출 주도형 경제발전을 성장 모델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입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나, 우리나라 수입 규모도 급격히 증가한 만큼 관련 산업보호를 위해 우회덤핑 규정 마련은 적절한 정책이며,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각국이 반덤핑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이를 회피하려는 세계적 기업들의 우회 수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은 반덤핑조치를 우회하는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 덤핑 방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우회 덤핑조사가 2017년 2건에서 2022년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2. 선행연구 검토

Coskun, S. et al.(2016)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수용 가능한 대응과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부적절한 관행을 구별하기 위해 연구를 하였으며, 초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분쟁 해결 과정에서부터 우루과이 라운드, WTO의 비공식 협의 그룹, 그리고 최근 도하 라운드 규칙 협상까지 우회덤핑 방지조치에 관한 다자간 규범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국들은 우회덤핑 회피 방지 대책을 합의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WTO 회원국들은 무엇이 적절한 행동이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인지를 정의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갖는 것에 대해 공통의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출국과 수입국 회원국 모두에게 원칙론적 입장과 산업계 등 실무 입장의 괴리는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임이 입증되었다.⁶⁾

Sud, J. D.(2016)는 2011년 인도 반덤핑법에 도입된 우회방지 규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측면을 연구하였다. 조사 당국이 우회덤핑 방지조항을 적용할 때 조사 당국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전반적으로 인도의 우회덤핑 방지 규정이 다른 WTO 회원국(예를 들어: EU)의 법과 원칙에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인도의 반덤핑관세 회피 방지제도는 더욱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⁷⁾

Uruchurtu, G. A.(2016)는 멕시코의 반덤핑관세 우회방지 조항의 유래와 현재 멕시코의 우회방지 절차를 설명하였다. 멕시코 법률의 현행 규정과 이 규정들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우회덤핑 방지 방법을 적시하고, 최종 부과 판정으로 끝난 조사

6) Coskun, S., Kreier, J and Yano, H., "Anti-Circumvention in the Multilateral System: Plus ça Change",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11(11), 2016.

7) Sud, J. D.,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Measures: Law and Practice of India",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11(11), 2016.

에 대한 분석자료를 근거로 멕시코 조사 당국이 우회 덤핑방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⁸⁾

Zhou, W. H.(2016)는 WTO 무역체제에서 우회덤핑과 우회덤핑 방지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였고, 특히 호주의 우회덤핑 방지제도에 대한 내용(알루미늄 압출봉 사례)을 연구하였다. 전형적인 우회덤핑 방지 방법은 우회덤핑을 기존의 반덤핑관세의 적용 범위를 회피하려는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반덤핑조치를 우회 수입 제품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덤핑조사 절차 없이 우회덤핑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의 복잡성과 쟁점은 회피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회피 활동과 합법적인 상업활동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회피 조사의 요소를 확정하고 회피 조사하는 선결 조건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GATT/WTO 협상에서 반덤핑관세 회피와 회피 방지제도에 관한 주요 문제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WTO 회원들은 회피 방지에 대해 다자간 합의할 수 있는 통일된 규칙을 만들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우회덤핑 방지제도에 대한 개별 국가의 각기 다른 기준과 운영 및 일방적 조치로 인한 세계무역의 불확실성 증대를 줄이고 우회덤핑 방지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다자간 우회덤핑 방지제도에 대한 통일 규칙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⁹⁾

곽동철(2017)은 우회 덤핑 방지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우회 덤핑 상황, 한국산 컬러TV 사건 등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다국적 기업의 출현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에 따라 기존 반덤핑 관세 조치 효과를 저해하는 우회덤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회덤핑 방지 규정을 다방면으로 규범화하고 반덤핑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투자전략 입안 시 우회 덤핑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한국 기업은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보호주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정부 당국이 주요 국가의 우회 덤핑 조사 사례를 지속해서 검토하고 각국의 우회 덤핑 규정 입법 동향을 자세히 살펴 한국 기업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⁰⁾ 또한, 외국기업의 우회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국내법에 우회덤핑 방지 규정을 도입하는 것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Sun, J Y and Lee, S(2017)는 한국이 외국 상품 수입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고찰하였다.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한국 기업의 패널 데이터로 이중 차분 모형을 이용하여 관세부과 전과 후를 비교하여 수입 경쟁기업의 생산성 변

8) Uruchurtu, G. A., "Anti-Circumvention of Anti-Dumping Measures: Mexico",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11(11), 2016.

9) Zhou, W. H., "Circumvention and Anti-Circumvention: Rising Protectionism in Australia", *World Trade Review*, 15(3), 2016.

10) 곽동철, 2017,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응," 통상연구실 Trade Focus 2019 Vol.22

화를 추정했다. 기존에는 반덤핑관세 조치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본 연구는 반덤핑 보호 기간에 보호받은 국내기업의 추정 생산력이 감소함을 증명하고 있으며, 시장 구조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통한 국내 산업 보호가 기업 생산력에 이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¹¹⁾

Sandkamp, A(2018)는 유럽연합(EU)이 실험 대상으로 사용한 이중 차분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반덤핑관세가 새로운 회원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정상적인 경제 법칙의 가설 아래 반덤핑관세가 새 회원국에 미친 무역충격은 외생적이라 가정하였다. 경제이론의 일반적 원칙과 일치하게, 이 연구 결과는 반덤핑관세는 생산자 가격을 인상하지만 이는 시장 경제 상태 국가에서 발생하는 수입 상품에만 해당하고, 비시장 경제 국가의 수입가격은 변동이 없었지만, 물량은 더 급격히 하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반덤핑관세의 수입억제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하며 관세는 비대상 수출국의 무역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Nur Tristita, D K and Panennungi, M A(2018)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사례 데이터와 제조업 기업 차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반덤핑 보호 정책이 수입 경쟁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평가했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이미 보호를 받은 업종과 보호를 신청했지만 보호받지 못한 업종 간의 반덤핑 정책 효과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보호받는 기업들의 평균 생산성 향상이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조치를 시행한 후 수입 경쟁기업의 생산성은 보호받지 못한 기업의 생산성보다 20.9% 높아졌다. 그리고 보호된 수입 경쟁기업 사이에 기업의 이질적인 반응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 기간에 낮은 초기 생산성 기업(low-initial productivity firms)의 생산성 향상 폭은 높은 초기 생산성 기업(high-initial productivity firms)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¹³⁾

Felbermayr, G and Sandkamp, A(2020)는 중국의 세관 데이터와 이중차분 모형을 이용하여 반덤핑 정책의 무역 효과를 연구하였다. 내생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기업별 제품 차이를 이용해 기업 차원의 수출품과 기업이 받는 반덤핑관세를 결합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기업 차원의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반덤핑관세는 수출을 줄이고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지만 생산자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종별 차이가 크고 유럽연합의 수입과 미국 수입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비교적 작은 수출국이 받는 영향이 비교적 큰 수출국이 받는 영향보

11) Sun, J. Y. and Lee, S., "Anti-Dumping Duty and Firm Heterogeneity: Evidence from Korea", *The World Economy*, 40(9), 2017.

12) Sandkamp, A., "The trade effects of antidumping duties: Evidence from the 2004 EU enlar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ifo Working Paper No. 261, 2018.

13) Nur Tristita, D. K. and Panennungi, M. A., "Anti Dumping Policy and Heterogeneity Responses on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Import-Competing Firms: Evidence from Indonesia",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12 (S1), 2018.

다 더욱더 크다는 것은 업계 내부의 재분배 효과로 나타났다. 또한, 반덤핑관세로 인해 중국 기업이 제3국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무역 전환(trade diversion)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¹⁴⁾

Yamashita, N and Yamauchi, I(2020)는 이중차분 모형 분석방식을 활용하여 1991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시장에 진출한 수출기업들의 반덤핑 관세부과 사례에 대한 정책 실험을 시행하였다.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수출기업들의 수출량 하락이 대상 수출국 기업들의 혁신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 기업들은 더 많은 혁신 활동을 통해 국제 특허출원을 확대하여 수출 충격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수출 강도가 비교적 높을 때 혁신 활동의 이런 자원 배치는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⁵⁾

조영진(2022)은 우회 덤핑방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동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경제 구조가 수출주도형인지 수입대체형인지에 따라 국가별로 처지가 다르고, 국가 내에서도 수출 비중이 큰 산업 혹은 기업과 내수 비중이 큰 산업 또는 기업에 따라 산업 및 기업별 처지가 다르므로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이 모든 국가에 바람직하다고 일괄적으로 볼 수는 없겠으나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한국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¹⁶⁾

Ⅲ. 주요국 우회덤핑 방지제도 분석

우회덤핑 규제를 자체적으로 규율하는 미국과 더불어 최근 우회덤핑을 규제하고자 하는 각국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⁷⁾ 지금까지 WTO 등에서 우회덤핑 관련 규정이 국제 규범화가 될 수 없었던 원인은 수출을 주로 하는 한국과 일본 등의 부정적 견해와 우회덤핑 개념이나 발동 규정, 조사 기준 등에 관한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국가들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조치가 일상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회덤핑 규정 등 무역구제제도 운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¹⁸⁾

14) Felbermayr, G. and Sandkamp, A., "The trade effects of anti-dumping duties: Firm-level evidence from China",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122, 2020.

15) Yamashita, N. and Yamauchi, I., "Exports and Innovation: Evidence from Antidumping Duties Against Japanese Firms",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 Discussion Paper Series, No. 317.

16) 조영진, 2022,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 대한 연구: 미국 및 EU 제도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Vol. 47, No. 5, pp.223-240.

17) 김경화, 2019, "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제 현황과 실무적 쟁점 -최근 미국 우회덤핑 조사를 중심으로," KITA 통상 리포트 2019 Vol.5, p.4

18) 김영채, 2022, "우리나라도 우회덤핑 방지 규정 도입해야," 한국무역신문

운영체제 개선에 앞서 주요국인 미국과 EU 각각의 우회 덤핑규정과 적용 범위 요건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예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은 1988년에 우회덤핑 방지 규정을 도입했으며, EU는 1987년도에 도입했다. 미국의 우회덤핑 적용 범위 요건으로는 4가지가 있으며, EU의 경우 5가지의 적용 범위로 이루어져 있다.

1. 미국의 우회덤핑 방지제도

미국 우회덤핑 규정으로는 1930 관세법 제781조와 미 상무부 규칙 제391, 225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미국의 자국 내 우회덤핑 적용 범위 요건으로는 총 4가지 세부 규정이 있다. 먼저, 미국 우회(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US), 둘째, 기타 외국을 통한 우회(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 세 번째, 사소한 변경이 가해진 물품(minor alteration of merchandise), 마지막으로 이후의 개발 물품(later developed products)으로 분류된다. 각 유형마다 고유의 법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요건이 충족된 경우 기존 반덤핑관세 조치가 우회덤핑 제품 및 그 구성부품에 신속히 확대 적용된다.¹⁹⁾

(1) 미국 우회(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US)

수출국이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구성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이를 현지에서 조립, 완성하여 반덤핑조치가 제품의 구성부품 또는 구성요소에 확대 적용된다. 적용 요건으로는 수입된 부품이나 구성품으로 미국 내에서 완성되거나 조립되고, 미국 내에서 조립, 완성 과정은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것이어야 하며, 수입 부품이나 구성품의 가치가 완성품의 가치에서 상당한 부분(significant portion)을 차지할 경우 우회덤핑으로 규정된다. 상무부에서 조립, 완성 과정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제781조 (a)(2))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 내 수행 과정에 있어 미국의 투자한 수준 2. 미국 내에서 수행한 연구 개발의 수준 3. 미국 생산 공정의 특성 4. 미국 생산 설비 규모 5. 미국 내에서 수행한 가치가 판매된 물품의 가격 얼마나 큰 비중 |
|---|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mode=&skey=%5C%22%BF%EC%B8%AE%B3%AA%B6%F3%B5%B5+%BF%EC%C8%B8%B4%FD%C7%CE+%B9%E6%C1%F6+%B1%D4%C1%A4+%B5%B5%C0%D4%C7%D8%BE%DF%5C%22&x=13&y=15§ion=1&category=3&no=80834> (검색일 2025.08.19.)

19) 박동철, 2017,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응,” 통상연구실 Trade Focus Vol.22, p.5

(2) 기타 외국을 통한 우회(merchandise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

기타 외국을 통한 우회 유형은 미국 우회덤핑 요건 중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이다. 특히 기타 외국을 통해 조립·완성되는 유형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기타 외국에서 조립, 완성 공정은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것이어야 하며,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국가로부터 수입된 부품의 가치가 완성품의 가치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때 우회덤핑으로 규정된다.²⁰⁾

예로는 2022년 7월 미 상무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을 상대로 조사 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우회 조사 사례는 미국 상무부의 2018년 4월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 결정 후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의 미국 수입량은 감소하였으나 한국 및 태국산 알루미늄 호일의 수출량이 급증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이 한국 및 태국을 통해 우회 수출하였다고 판단하여 우회덤핑 조사를 직권으로 개시하였다. 수출량이 급증한 한국산 및 태국 알루미늄 호일은 조치대상을 받은 중국산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판단된다. 위의 두 알루미늄 호일은 중국산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한국 및 태국에서 수행된 조립, 완성 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아니한다.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 및 태국의 물품 가격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 가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 교역 패턴의 변화도 우회 조사 우회덤핑조사 개시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3) 사소한 변경이 가해진 물품(minor alteration of merchandise)

세 번째 적용 요건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물품과 동종물품으로서 세번 분류의 동일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태나 외관에서 사소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우회덤핑으로 규정된다. 경미한 변경을 통해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적용 요건이다. 예외적으로 상무부가 조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도 있다. 상무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통해 우회덤핑 여부를 판단한다.

1. 전반적인 물리적 성질
2. 최종구매자의 기대
3. 최종용도
4. 거래 및 광고 경로
5. 제품의 전체 가치 대비 변경비용 등이 있다.²¹⁾

20) 김영화, 2019, “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제 현황과 실무적 쟁점 -최근 미국 우회덤핑 조사를 중심으로,” KITA 통상 리포트 2019 Vol.5, p.2

21) 19 U.S. Code § 1677j (c), Tariff Act of 1930

(4) 이후의 개발 물품(later developed products)

반덤핑관세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개발된 물품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제품과 일반적 물리적 특성이 같은 물품(same general physical characteristic)으로서 이후 개발 물품의 최종적 구매자의 기대(expectations of the ultimate purchasers)가 기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기존의 물품과의 최종적 사용처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기존 물품과 동일한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되며 기존 물품과 유사한 방법으로 전시되는 경우에는 우회덤핑으로 규정한다.

미국의 우회덤핑 조사는 우회덤핑 발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상무부에 조사신청을 하면 우회덤핑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상무부 질문지 송부, 상무부 판정이 있다. 조사 이행은 45일 이내에 이해당사자에게 확인 후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상무부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다.²²⁾ 조사가 진행되면 상무부는 질문지를 이해당사자에게 보내며 질문의 답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질문이 진행될 수 있다. 질문지 내용으로는 공정비용과 생산 공정, 수출한 부품 또는 요소 가치의 자료가 있으며 해당 관련 자료의 따라 분석한 뒤 예비 판정을 내리게 된다.²³⁾ 이해 당사자로부터 반박 요청이 있으면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다. 통상 상무부는 조사신청 접수 후 300일 이내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²⁴⁾

2. EU의 우회덤핑 방지제도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최초로 입법화한 것은 유럽이사회(EC)였다. 1987년 우회 덤핑 관련 방지규정을 도입한 반덤핑 관련 기본규칙인 이사회 규칙 1761/87²⁵⁾이 있었지만 1988년 GATT의 위반 판정에 따라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EC는 이사회 규칙 384/96을 통해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의 384/96은 과거 규칙의 다양한 우회의 대처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고 조치의 범위가 확대, 강화되었다.

우회덤핑으로 규정하는 요건은 이사회 규칙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법률 요건에는 교역 형태의 변화, 관행, 공정 또는 작업, 관세부과 이외의 적절한 사유 또는 경제적 타당성의 불충분,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 훼손, 덤핑의 존재가 있다.²⁶⁾ 이러한 요건에 따라 우회덤핑 판정을 받게 되면 전통적 우회 이외의 제3국에서 수입되는 동종 상품, 원산지 허위신고, 사소한 변경이 가해진 미소 변경제품 수입에도 확대 적용된다.

22) 19 C.F.R Part 351.225 (b)

23) 19 C.F.R Part 351.225 (f)(3)

24) 19 C.F.R Part 351.225 (f)(5)

25) 2423/88에 통합

26) EU Regulation No 384/96, Article 13

(1) 교역형태 변화(a change in the pattern of trade)

반덤핑조치 대상국과 EU, 제3국과 EU 간 교역 형태의 변화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조치대상 제품의 수입 감소, 다른 제품으로의 대체, 제3국으로부터 수입 증가, 덤핑수출을 한 국가나 제3국으로부터의 미소변경 제품의 수입 증가 되었는지 아닌지로 판단한다. 또한, 교역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는 대체되는 제품의 수출 증가와 반덤핑조치 대상 제품의 수입 감소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덤핑조사가 개시된 이후나 조치가 부과된 이후에 발생한다.

중국산 신발류 사례는 교역 형태의 변화가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규정(EC) No 553/2006(4)에 의한 최초 조사에서 잠정 조치를 부과한 이후 감소했다. 반면에, 마카오로부터 수입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러한 교역 형태의 변화는 2005년, 2006년,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판매량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²⁷⁾ 실증 자료를 통해 2006년 4월 잠정조치 시행 이후 중국에서 마카오로 신발류 수입과 마카오에서 EU로서 같은 신발류 수출량이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조치 이후 마카오를 통해 대규모 환적 작업이 수행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이처럼 EU 위원회는 수출입 통계정보를 통해 교역 형태의 변화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반덤핑조치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표 3> 2005~2007년 신발류의 중국->마카오->EU 수출량

기 간	중국->마카오 수출량
2005년 4월 ~ 12월	약 4만개
2006년 4월 ~ 12월	약 450만개
2007년 4월 ~ 12월	약 510만개
기 간	마카오-> EU 수출량
2005년 4월 ~ 12월	약 30만개
2006년 4월 ~ 12월	약 1080만개
2007년 4월 ~ 12월	약 820만개

*출처: Macao Economic Services Database

(2) 관행, 공정 또는 작업(a practice, process or work)

관행, 공정 또는 작업에서 우회로 인정되는 행위로는 혼합, 절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품을 미세하게 변경하여 반덤핑조치 적용을 받지 않는 관세 코드에 속하

27) COUNCIL REGULATION (EC) No 388/2008 of 29 April 2008

게 하는 행위, 가장 대표적인 우회덤핑 유형으로 제품을 제3국을 통해 환적하여 EU로 운송하는 행위, 판매패턴과 경로를 변경하는 것, EU 영내 혹은 제3국에서의 부품조립 행위 등이 있다.²⁸⁾

이러한 관행, 공정 또는 작업이 무역형태 변화를 초래하는 것과 같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중국산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사례를 보면 관행, 공정 또는 작업에서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제3국으로 환적되어 EU로 수입되었는지가 법적 쟁점이었다. EU는 중국산 철강 로프 및 케이블(SWR)의 무분별한 저가 수입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게 됨에 따라 1999년 8월부터 중국산 철강 로프 및 케이블에 60.4%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철강 로프 및 케이블이 모로코를 우회하여 유럽으로 수입되었고, 2004년 10월 모로코산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다. 이 밖에도 중국산 철강 로프 및 케이블이 한국에서 환적되어 유럽으로 우회 수입되고 있다는 제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2010년 5월 일부 기업을 제외한 한국산 철강 로프 및 케이블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한국의 수출용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생산 규모가 EU로의 총수출량보다 적었으며 한국의 조사 당국 또한 중국산 수입 SWR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발표한 사실을 근거로 EU 위원회는 중국산 SWR가 한국에서 환적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²⁹⁾

(3) 관세부과 이외의 적절한 사유 또는 경제적 타당성의 불충분(insufficient due cause or economic justification other than the imposition of the duty)

법률 요건 두 번째인 관행, 공정 또는 작업에서 제품의 미세한 변경, 혼합, 절단 등이 반덤핑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적절한 사유나 경제적 타당성을 찾을 수 없으면 법률 요건 세 번째에 부합하게 된다. 다만 EU 영내에서 조립 또는 생산하여 얻는 이윤이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³⁰⁾ 이 요건의 입증책임은 관행적으로 수출자가 적절한 사유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반덤핑관세 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다.³¹⁾

중국산 스테인리스 패스너 사례는 적절한 사유 없이 반덤핑관세 회피 목적으로 필리핀에서 환적된 것으로 판단하여 반덤핑관세 조치를 필리핀산에 확대 적용한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한 조치 이후, 필리핀으로부터 조치대상 제품의 EU로의 수입이 2004년 연간 69 MT 수준에서 2011년 14,528 MT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104 MT에서 15553 MT

28) EU Regulation No 384/96, Article 13, para. 1, 4th sentence

29) IMPLEMENTING REGULATION OF THE COUNCIL (EU) No 400/2010 of 26 April 2010

30) Graphite electrode systems from India(2007) OJ L277/18.

31) Wolfgang Muller, Nicholas Khan, Tibor Scharf, Supra note 53, p. 580. 58) Id. 59) Id

로 급격히 증가했다. EU 위원회 조사 결과 스테인리스 패스너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회피 외에 환적에 대한 적절한 사유나 경제적 타당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필리핀을 거쳐 중국에서 출발하는 특정 스테인리스 패스너와 그 부품 운송 및 재적재와 관련하여 환적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관세 이외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³²⁾

<표 4> 2004~2011년 필리핀에서 EU로의 스테인리스 패스너 수출량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RP
양(MT)	69	23	1369	6048	7046	5406	15580	14528	12075

* 출처: Eurostat

<표 5> 2004~2011년 중국에서 필리핀으로의 스테인리스 패스너 수출량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RP
양(MT)	1104	2022	2107	3727	3856	7513	11262	15553	15632

*출처: Global Trade Atlas Database

(4) 반덤핑관세의 구제 효과 훼손(remedial effects of the duty)

이 요건은 반덤핑관세 구제 효과가 가격 또는 수량 측면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 훼손 입증에 위한 반덤핑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우회덤핑 혐의를 받는 물품이 기존 반덤핑조사시 산업피해 인정 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음이 입증되면 동 요건은 충족된다.³³⁾

(5) 덤핑의 존재(evidence of dumping)

원심에서 확립된 정상가격과 비교를 통해 덤핑 증거를 발견하면 충족된다. 이는 우회덤핑으로 의심되는 물품 수입가격이 기존 원심에서 확립된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덤핑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데 정상가격은 새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반덤핑조사 시 도출한 정상가격을 그대로 활용되는 것이다. 반면 원심에서 덤핑마진과 우회덤핑 마진은 동일할 필요는 없다.

EU 조사절차는 이해관계가 있는 역내 산업이 우회 덤핑 관련 조사신청을 하게 되고, 이후 우회 덤핑요건에 대한 증거가 존재할 경우 EU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와 협의한 후 개시하게 된다. 이때 EU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할 수 없다.³⁴⁾ EU 위원회가 이해당사자 또는 회원국의 조사개시와 관련된 요청서를 분석 완료한

32)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05/2013 of 7 March 2013

33) Wolfgang Muller, Nicholas Khan, Tibor Scharf, Supra note 53, p.582.

34) COUNCIL REGULATION (EC) No 461/2004, Article 13.3 1st sentence

경우 또는 위원회 조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회원국들에 정보를 제공한다.³⁵⁾ 우회덤핑 조사는 관세 당국의 도움을 받아 EU 위원회가 수행하고 9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³⁶⁾

우회덤핑 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이 반덤핑조치의 확대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EU 이사회가 EU 위원회의 제안을 1개월 이내로 거부하지 않는 한 확대적용이 채택된다.³⁷⁾ 우회덤핑 행위를 하지 않은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면제요청이 존재한다. 면제조치는 EU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기간과 조건에서만 유효하며 우회 관련 관행, 과정, 작업이 EU 영내 또는 영외에서 이뤄지면 반덤핑조치 적용의 생산자와 관계되어 있지 않고 우회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업체에 면제가 부여된다.

3. 우리나라 우회덤핑 법령 분석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를 많이 받고 있고,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자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반덤핑제도의 제한적 운용뿐만 아니라 우회덤핑 방지제도 또한, 회의적 입장을 취했었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부(the Permanent Mission of Korea)는 우회의 정의에 대한 문제와 우회덤핑 방지규정 신설의 의문을 전달하는 보고서를 1999년 우회덤핑 방지에 관한 비공식그룹(Informal Group on Anti-Circumvention)에 제출했었다. 특히 우회 행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별이 정확해야 하며 제3국에서의 생산 재배치 및 조립이 우회덤핑을 구성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³⁸⁾

또한, 법적 근거 미비로 우회 덤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덤핑방지조치를 우회하고 있던 의심이 들어도 기존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품과 다른 사안으로 보고 새로 덤핑조사를 진행해야 해 실질적인 국내산업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23년 말 우회덤핑 조사의 근거를 마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구성하였다.

개정된 관세법을 보면 처음 원심조사를 했을 때 조사대상 물품 범위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빠진 물품을 나중에 추가하는 개념으로 하였고, 이는 미국이나 EU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회덤핑 유형은 덤핑방기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35) COUNCIL REGULATION (EC) No 461/2004, Article 13.3, 2nd sentence

36) COUNCIL REGULATION (EC) No 461/2004, Article 13, 3rd sentence

37) COUNCIL REGULATION (EC) No 461/2004, Article 13, 4th sen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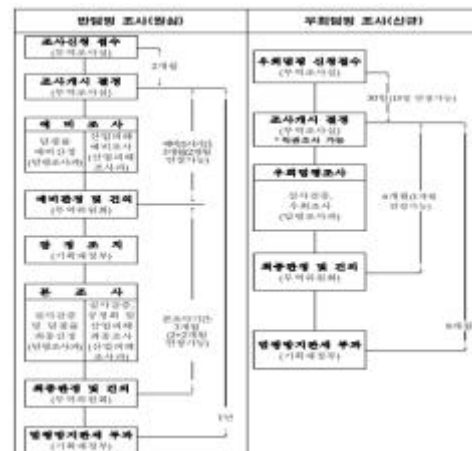
38) 이경화 외, 2009, “우리나라에서의 우회적 덤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형태 등을 변경하는 행위로 규정했다.³⁹⁾ 직권조사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될 경우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개시하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와 공급국 정부, 공급자 등에 통보토록 했다.⁴⁰⁾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우회덤핑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고, 조사개시 여부 결정 기한은 30일(단, 15일 연장 가능)로 했다. 조사수행 시 기간과 관세부과는 관보게재일로부터 각각 6개월, 8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관계인 자료협조 요청 시에는 질의서 답변 기한은 40일 이상으로 하고 의견진술 및 협의 기회를 부여하되 공청회는 따로 열지 않는다.⁴¹⁾

우회 덤핑방지관세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물품에 적용되는 공급자, 공급국별 덤핑방지관세율이나 기준 수입가격에 따르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나 자료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선 단일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⁴²⁾

우회덤핑 관련 관세법령 개정 주요내용		
우회덤핑의 유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 형태 등을 변경하는 행위	
	고려요소	생산설비 등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직권조사 및 조사신청, 조사개시	직권조사 근거 및 개시	특별한 상황이 인정될 경우 무역위가 직권조사 개시(관세청 사전검토 가능) 직권조사를 개시할 경우 기재부, 공급국 정부, 공급자 등에 통보
	조사신청의 방법 및 조사개시	신청하려는 자는 우회덤핑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 조사개시 결정기한은 30일 원칙, 15일 연장 가능 기타 관련된 조사신청 절차는 덤핑조사를 준용
조사수행	조사기간	조사개시 관보게재일로부터 6개월 원칙, 1개월 연장가능
	관세부과	조사개시 관보게재일로부터 8개월 원칙, 1개월 연장가능
조사철회 및 종료	이해관계인 자료협조 요청	질의서 답변기한은 40일 이상 의견진술 및 협의 기회 부여하되, 공청회는 미개최
	조사철회 및 종료	조사철회는 덤핑규정 준용
우회덤핑방지 관세 부과	기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기존 관세율 범위에서 단일 관세율 부과 가능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002>

가벼운 변경 행위 판단기준은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39) 관세법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0)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참조

41)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42)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7(우회 덤핑의 조사 절차 등)

법률 요건은 다음과 같다.⁴³⁾ 우회덤핑(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해당된다.

IV. 우회덤핑 방지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1. AI 기반 우회덤핑 조기탐지 시스템 구축

현대 국제무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은 방대한 무역 데이터 분석과 패턴 탐지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⁴⁴⁾. 관세청은 2025년 AI 기반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수입신고서 처리 속도를 24.1초에서 9.7초로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데이터 분석 능력을 2.7배 향상시켰다. 특히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마약 탐지 및 밀수물품 선별 분야에서 지능형 관세행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머신러닝과 자연어 처리를 포함한 고급 AI 알고리즘은 복잡한 무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회덤핑 시도를 나타내는 패턴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기법을 활용한 머신러닝 모델은 정상적인 무역 패턴에서 벗어나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Z-점수(Standard Score)를 활용한 통계적 이상탐지 모델과 딥러닝 기반의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노재연·김경화(2025)의 연구에서 제시된 무역위원회의 수입동향시스템(ITAS)을 확장하여 다양한 출처의 무역 데이터, 세관 기록, 업계 정보를 통합하는 중앙집중식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⁴⁵⁾ 이는 관세청의 현행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이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 체계와 연계하여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베트남산 합판 사례와 같이 과거 무역 데이터를 기

43)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과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회덤핑(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2.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4.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
5. 영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4) 임영철 (2025), "다가올 미래,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제통상 환경변화", 한국원산지정보원.

45) 노재연·김경화 (2025), "한국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연구", 『무역구제연구』, 통권 74호, pp.73-96.

반으로 우회덤핑 패턴을 학습하는 예측 모델을 구축한다. 2020년 반덤핑관세 부과 후 조치대상물품의 수입량 감소(-14.6%)와 대체가능물품인 HS4412.41-1000의 급격한 수입 증가(34.8%) 패턴을 AI가 학습하여 유사한 변화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이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100일간 운영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의 성과(428억 원 규모 적발)를 바탕으로,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조사 우선순위를 자동 배정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최창환(2023)의 연구에 따르면 AI 기반 탐지 시스템 도입으로 우회덤핑 탐지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으며, 표적 집행을 통한 효과적 규제가 가능하다.⁴⁶⁾ 관세청의 2025년 성과를 보면 AI를 활용한 선별적 단속으로 19개 업체에서 428억 원 규모의 우회 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전수조사 방식 대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결과이다. 또한 강력한 조기탐지 시스템의 존재 자체가 잠재적 우회덤핑 시도를 억제하는 예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무역위원회·관세청·기획재정부 통합 대응체계 구축

우리나라 반덤핑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기획재정부가 관세부과를, 관세청이 집행을 각각 분담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상신(2024)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우회덤핑 대응에 한계가 있다.⁴⁷⁾ 특히 노재연·김경화(2025)의 연구에서 제시된 베트남산 합판 사례처럼 '경미한 변경' 유형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한 우회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⁴⁸⁾

관세청의 무역안보특별조사단과 무역위원회의 조사역량,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을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2025년 관세청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 강화한 무역안보 협력체계를 모델로 하여, 국내 기관 간에도 마약 밀수단속 및 우회수출 차단에 준하는 수준의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한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HS4412.41-1000(베트남산 9만톤 수입)과 HS4412.51-0000(인도네시아·중국·말레이시아산 21만 톤 수입) 사례처럼 복합적인 우회 패턴에 대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합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무역위원회의 조사기법 고도화와 관세청의 현장 단속역량,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을 결합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46) 최창환 (2023), "새로운 무역구제 조사방식과 다차원적 대응전략: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방안", 『통상정보연구』, 25(4), pp.185-216.

47) 이상신 (2024), "관세법상 우회덤핑방지관세의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17(2), pp.1-26.

48) 노재연·김경화 (2025), 전거서.

조영진(2022)의 연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우회덤핑 방지 전략, 자원 배분, 집행 조치의 정렬을 보장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의 및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⁴⁹⁾ 관세청이 2025년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에서 주도한 'AI와 관세행정' 논의처럼 국제협력 수준의 체계적 접근을 국내 기관 간 협력에도 적용이 필요하다.

공동 대응팀 운영을 통해 중복 조사를 제거하고 증거 수집 과정을 신속화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2025년 성과를 보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통한 집중적 접근으로 기존 대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한정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회덤핑 방지 효과가 큰 사건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일관된 집행을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지속적 개선을 위한 민관학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우회덤핑 기법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경미한 변경' 판단 기준처럼 물리적 특성, 용도, 생산설비, 소요 비용 등에 대한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현장 전문지식, 학계의 연구개발 역량,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결합한 민관학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우회덤핑 방법의 새로운 동향을 파악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정기적인 토론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관세청이 2025년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구축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모델로 하여, 한국무역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베트남산 합판 사례처럼 교역 패턴 분석을 통한 우회덤핑 탐지 방법론을 고도화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며, 특히 AI 기반 탐지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어, 관세청의 유니패스 시스템 개편 성과를 우회덤핑 분야로 확장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새로워진 우회덤핑 기법에 대해 다차원적 대응전략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기법 고도화 노력과 연계하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민관학 파트너십을 통해 우회덤핑 대응 전략의 지속적 개선과 진화하는 우회 기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관세청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주도한 AI 기반 관세행정 혁신 논의처럼, 정부, 산업계, 학계의 협력을 통해 우회덤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첨부 논문에서 제안한 제3국 조립·완성 유형의 신설과 같은 제도적 개선사항도 민관학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49) 조영진 (2022), "우회덤핑 방지제도에 대한 연구: 미국 및 EU 제도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47(5), pp.223-240.

V. 결론 및 시사점

2025년 글로벌 무역환경의 급변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회덤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우회덤핑 방지체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적 혁신, 제도적 개선, 협력체계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AI 기반 조기탐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역 패턴 분석 방법론을 자동화하고 고도화하여, 베트남산 합판 사례와 같은 복합적 우회 패턴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관세청의 2025년 성과(428억 원 규모 적발)는 이러한 AI 기반 접근법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둘째, 무역위원회·관세청·기획재정부 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역할 분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적 접근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첨부 논문에서 제시된 제3국 우회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공동 조사체계가 필수적이다.

셋째, 민관학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법제 개선방안들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이론적 기반과 산업계의 현장 경험이 결합되어야 한다.

넷째, 현행 "경미한 변경" 유형에 국한된 규제 범위를 "제3국 조립·가공" 등으로 확대하여 미국·EU 수준의 포괄적 우회덤핑 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2025년 7월부터 제3국 우회 규제 검토에 착수한 것은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한국의 우회덤핑 방지체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과 글로벌 무역전쟁 시대에 진화하는 우회 기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제시한 모니터링 방법론과 베트남산 합판 사례 분석 결과를 AI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우회덤핑 방지체도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곽동철, (2017),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응," 통상연구실 Trade Focus Vol.22

관세청 (2025), "2025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2025), "428억 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적발", 관세청 보도자료.

김경화, (2019), "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제 현황과 실무적 쟁점 -최근 미국 우회덤핑

조사를 중심으로,” KITA 통상 리포트 2019 Vol.5

김시섭, (2017), “우회덤핑방지제도의 국제적 실행 및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노재연·김경화 (2025), “한국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연구”, 『무역구제연구』, 통권 74호, pp.73-96.

이경화, 조유미, (2009), “우리나라에서의 우회적 덤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신 (2024), “관세법상 우회덤핑방지관세의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17(2), pp.1-26.

임영철 (2025), “다가올 미래,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제통상 환경변화”, 한국원산지정보원.

조문희, 이천기, 강민지, 정민철, (2021), “반덤핑 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영진 (2022), “우회덤핑 방지제도에 대한 연구: 미국 및 EU 제도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47(5), pp.223-240.

최창환 (2023), “새로운 무역구제 조사방식과 다차원적 대응전략: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방안”, 『통상정보연구』, 25(4), pp.185-216.

표인수·유세열 (2018), “무역구제제도의 활성화와 우회덤핑 및 최소부과원칙 (lesser-duty rule)의 재검토”, 『국제통상연구』, 23(4), pp.65-9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주요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 비교 연구,” 관세연구 14-04

외국문헌

Coskun, S., Kreier, J and Yano, H., "Anti-Circumvention in the Multilateral System: Plus ça Change",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11(11), 2016.

Edwin Vermulst (2016),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Measures: Law and Practice of the European Union",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11(11/12).

Felbermayr, G. and Sandkamp, A., "The trade effects of anti-dumping duties: Firm-level evidence from China",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122, 2020.

Jesse Kreier, Seref Coskun, and Hiromi Yano (2016), "Anti-Circumvention in the Multilateral System: Plus ça Change",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11(11/12).

Margaret Spicer and Peggy Clarke (2016), "Anti-Circumvention of Anti-Dumping Measures: Law and Practice of the United States",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11(11/12).

Nur Tristita, D. K. and Panennungi, M. A., "Anti Dumping Policy and Heterogeneity

Responses on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Import-Competing Firms: Evidence from Indonesia”,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12 (S1), 2018.

Sandkamp, A., "The trade effects of antidumping duties: Evidence from the 2004 EU enlar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ifo Working Paper No. 261, 2018.

Sud, J. D.,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Measures: Law and Practice of India”,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11(11), 2016.

Sun, J. Y. and Lee, S., "Anti-Dumping Duty and Firm Heterogeneity: Evidence from Korea”, *The World Economy*, 40(9), 2017.

Uruchurtu, G. A., "Anti-Circumvention of Anti-Dumping Measures: Mexico”,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11(11), 2016.

Yamashita, N. and Yamauchi, I., "Exports and Innovation: Evidence from Antidumping Duties Against Japanese Firms”,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 Discussion Paper Series, No. 317.

Zhou, W. H., "Circumvention and Anti-Circumvention: Rising Protectionism in Australia”, *World Trade Review*, 15(3), 2016.

[국내기사]

김상욱, 2005, “관세청, 일회용라이터 대량 밀수조직 검거,”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8886576565968&mediaCodeNo=257>(검색일 2024.04.22.)

김영채, 2022, “우리나라도 우회덤핑 방지 규정 도입해야,” 한국무역신문,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mode=&skey=%5C%22%BF%EC%B8%AE%B3%AA%B6%F3%B5%B5+%BF%EC%C8%B8%B4%FD%C7%CE+%B9%E6%C1%F6+%B1%D4%C1%A4+%B5%B5%C0%D4%C7%D8%BE%DF%5C%22&x=13&y=15§ion=1&category=3&no=80834>(검색일 2024.04.19.)

[관련법령]

관세법 제230조 / 관세법시행규칙 제19조 / 대외무역법 제38조

2002.5.21. 재정경제부령 공포

COUNCIL REGULATION (EC) No 388/2008, (EC) No 461/2004, (EU) No 205/2013

EU Regulation No 384/96, Article 13

Graphite electrode systems from India(2007) OJ L277/18

IMPLEMENTING REGULATION OF THE COUNCIL (EU) No 400/2010 of 26 April 2010

Wolfgang Muller, Nicholas Khan, Tibor Scharf, Supra note 53

19 C.F.R Part 351.225

19 U.S. Code § 1677j, Tariff Act of 1930

· 국문초록

2025년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45%의 관세 부과와 185개국 대상 상호관세제 도입으로 우회덤핑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제시가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모니터링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관세청의 2025년 상반기 성과(428억원 규모 적발)와 AI 기반 유니패스 시스템 개편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미국과 EU는 2005-2025년 우회덤핑 조사의 약 77%를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글로벌 공급망 지배력에 따른 우회덤핑 위험성을 입증했다. 둘째, 한국은 2025년 8월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범위를 '경미한 변경'에서 '제3국 조립·완성'까지 확대하여 미국·EU 수준의 포괄적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베트남산 합판 사례 분석을 통해 반덤핑관세 부과 후 조치대상 물품 수입 감소(-14.6%)와 대체가능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HS4412.41-1000: 34.8% 증가) 패턴을 확인했다.

정책제언은 첫째, 머신러닝과 이상탐지 기법을 활용한 AI 기반 우회덤핑 조기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역패턴 분석의 자동화와 고도화를 달성해야 한다. 둘째, 무역위원회·관세청·기획재정부 간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기관별 전문성을 결합한 공동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계의 현장전문지식, 학계의 연구개발 역량, 정부의 정책추진력을 결합한 민관학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WTO 다자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의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국제적 모범사례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국내 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기여를 제공한다.

주제어: 우회덤핑, 반덤핑관세, AI 기반 탐지시스템, 민관학 협력, 국제무역, 무역구제제도

Abstract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n 2025 is experiencing unprecedented upheaval due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second-term trade war and the spread of protectionism. With the imposition of up to 245% tariffs on Chinese imports and reciprocal tariffs targeting 185 countries, the risk of circumvention dumping has surged dramatically. This study aims to propose efficient operational strategies for Korea's anti-circumvention system, which was fully implemented in January 2025.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anti-circumvention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nd examines Korea's monitoring strategies through the Vietnamese plywood case study by Noh Jae-yeon and Kim Kyoung-hwa (2025). Additionally, it analyzes the Korea Customs Service's first-half 2025 achievements (detection of 42.8 billion won in violations) and the AI-based UNIPASS system renovation.

Key Findings are as followed. First, the US and EU conducted approximately 77% of their circumvention investigations from 2005-2025 targeting Chinese companies, demonstrating the circumvention risks associated with global supply chain dominance. Second, Korea expanded its regulatory scope from "minor alterations" to "third-country assembly and completion" through the August 2025 amendment of the Customs Act Enforcement Decree, pursuing a comprehensive system comparable to US-EU standards. Third, analysis of the Vietnamese plywood case confirmed patterns of decreased imports of targeted products (-14.6%) and sharp increases in substitute products (HS4412.41-1000: 34.8% increase) following anti-dumping duty imposition.

For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establish an AI-based early detection system for circumvention dumping utilizing machine learning and anomaly detection techniques to achieve automation and sophistication in trade pattern analysis. Second, create an integrated response system among the Trade Commission, Korea Customs Service, and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o establish joint investigation mechanisms combining each agency's expertise. Third, build a foundation for continuous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public-private-academic partnerships that combine industry field expertise, academic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and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 capacity.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contributions enabling Korea's anti-circumvention system to develop as an international best practice in the absence of WTO multilateral norms and to substantively protect domestic industries in the changing global trade environment.

Keywords: circumvention dumping, anti-dumping duties, AI-based detection system, public-private-academic partnership, international trade, trade remedy system